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403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지원사업 목적

종합병원이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지원사업 기간

○ (지정기관*) 2026. 7. 1.(지정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 (예비 지정기관**) 지정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 이내 요건 충족 시 2028. 12. 31.까지

* 지원사업 효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 시 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 대상

3. 신청대상 및 신청서 제출

가. 신청대상

○ **(지정)** 진료역량 및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지정요건) ❶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❷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❸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6 version) 종류 350개 이상('24년 또는 '25년 진료분 기준)

○ **(예비지정)**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 중 예비지정요건을 2개 이상 충족(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필수)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예비지정요건) ❶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❷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필수)** ❸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6 version) 종류 300개 이상('24년 또는 '25년 진료분 기준)

- 예비지정 기관은 2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5. 18. ~ 2026. 6. 5.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❶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❷ 이행계획서 [별지 제2-1호 서식] ❸ 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참고 2]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참고
- 담당 부서: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개선부
  - 문의: (033)-739-2148~50, 2164

4.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종합병원 · 병원급 대상 유사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

** 단, 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 희망 시 타 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함께 제출

○ **선정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5. 지원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지원사업 이행약정 체결**

-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지원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사업 수행 및 지침 준수**

-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

1 기능강화 지원

❶ (중환자실 수가 가산)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운영 보상 강화**

-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 입원 1일당 **정액 수가 가산**(3~15만원)

* 적정성 평가 결과: 1~2등급(15만원), 3등급(9만원), 4등급(3만원)

❷ (응급수술 가산) **2차 병원**에서 해결 가능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 인상

* **(대상)**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 환자 대상)
(가산율)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150%

❸ (24시간 진료 지원)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 지원,** 일부 사전 지급 및 실제 지급실적 등 주기적 확인하여 사후 지급

* 예비비 지원 이력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24시간 진료(예비비) 기지원 기관	24시간 진료 신규지원 기관	
			응급의료센터/ 심뇌센터 이상	그 외
전문의	총 인원 대비	10% 이내	7% 이내	5% 이내
	일당 당직비	평일 22.5만원/ 휴일 36만원		
간호사	총 인원 대비	5% 이내	5% 이내	5% 이내
	일당 당직비	평일 6만원/ 휴일 9만원		

2 성과지원

❹ **(성과평가 지원)** 지원기관의 기능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 적정진료, 지역 의료문제 해결 및 진료협력 강화 등

❺ **(진료협력 기반구축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뢰·회송 시스템 개발비용 지급

* (성과평가 지원) 예비 지정기관은 지정요건 충족 후 본지정 이후부터 지원

** (진료협력 기반구축 지원) 예비 지정기관도 포함하여 지원

참고2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 **(접속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2. 시범사업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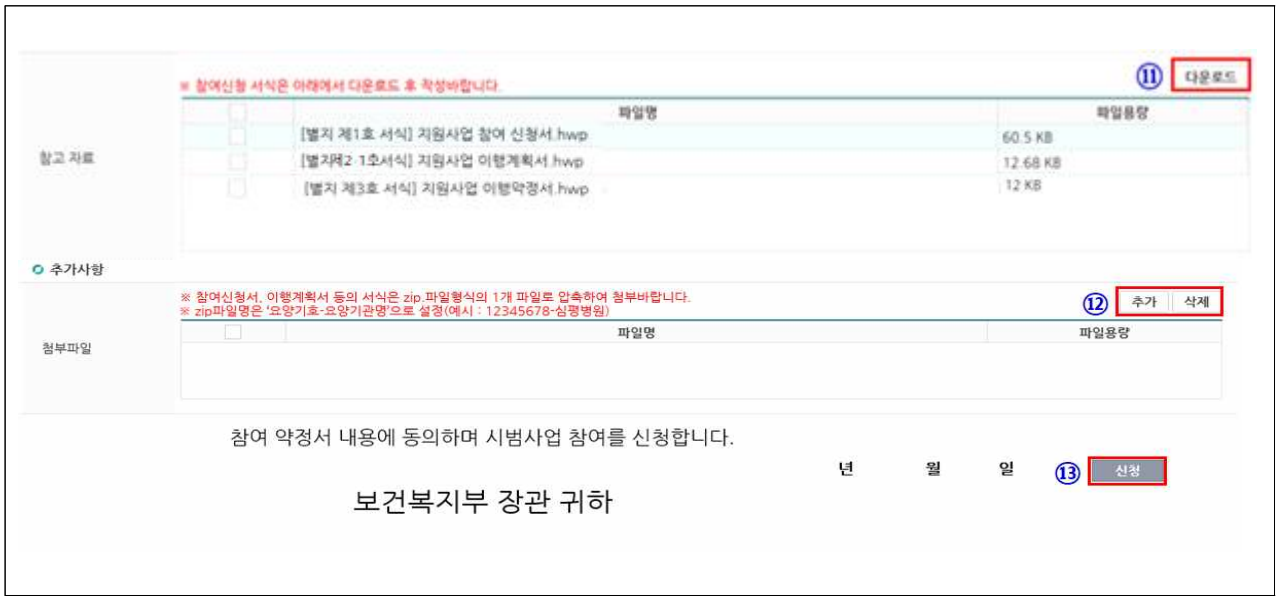
➲ 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택

➲ ② ~ ⑦: 자동 입력됨

➲ ⑧, ⑨: 지원사업 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기재

➲ ⑩: 필요시 내용 기입

3.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⑪: 체크박스 선택 후 참여 신청 서식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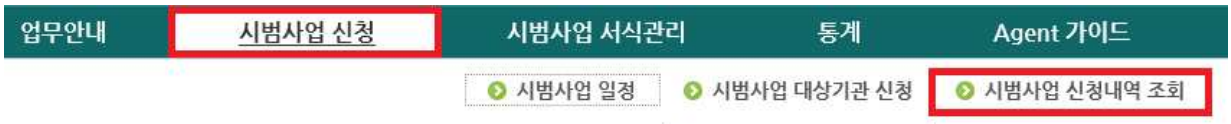
➲ ⑫: '추가' 버튼 클릭하여 별지 제1호, 제2-1호 및 제3호 서식을 하나의 zip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 zip 파일명은 '신청기관 요양기호-신청기관 요양기관명'으로 설정 (예시 : 12345678-OOO병원)

➲ 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4. 지원사업 신청내역 확인

① (상단메뉴)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클릭



②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택 후 조회 클릭하여 지원사업 신청 내역 확인



붙임 **지원사업 참여신청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기관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소 재 지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사업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e-mail	
사업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e-mail	

본 의료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지원사업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별지 제2-1호 서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이행계획서 (2026년)
[별지 제3호 서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이행약정서

[별지 제2-1호 서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이행계획서 (2026년)

2026. 00. 00.

○○○ 병원

사 업 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1. 일반현황('26년 4월) (괄호 내용 기재)

일반의	( ) 명	전문의	( ) 명
간호사	( ) 명	진료지원간호사	( ) 명

* 진료지원간호사 수는 간호사 수에서 제외

2. 지정요건 (해당 항목에 ☑ 표기 및 괄호 내용 기재)

❶ 의료기관 인증	□ 인증 (*YYYY.MM.DD.~YYYY.MM.DD.*) □ 미인증 * 의료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급성기병원)을 받은 기관
❷ 응급의료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YYYY.MM.DD.~YYYY.MM.DD*) □ 지역응급의료센터 (*YYYY.MM.DD.~YYYY.MM.DD*) □ 지역응급의료기관 (*YYYY.MM.DD.~YYYY.MM.DD*) □ 미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 내역
❸ AADRG 종류	'24년 ( ) 개 '25년 ( ) 개 * 해당년도에 진료한 AADRG(KDRG 4.6 version) 종류

3. 지정요건 중 미충족요건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내 달성계획(예비지정 기관)

○ 의료기관 인증(급성기) 미충족 기관

- 예시) '00년 0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 예정

○ AADRG 종류 미충족 기관

- 예시) '26년 하반기 000 진료과 신설 예정

4. 운영 현황 및 계획 (괄호 내용 기재)

	운영현황	운영계획
❶ 적정 진료	① 의료수익 중 급여수익 비율('24년) (*급여수익 ÷ 의료수익 × 100*) % - 의료수익 ( ) 원 - 급여수익 ( ) 원	① 의료수익 중 급여수익 비율('27년) (*급여수익 ÷ 의료수익 × 100*) % - 의료수익 ( ) 원 - 급여수익 ( ) 원

* 의료수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기준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을 합한 금액

** 급여수익: 선별급여포함 요양급여비용 총액금액(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❷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운영현황	운영계획
② 지역환자 비율('25년) (*지역환자 ÷ 전체환자 × 100*) % - 전체환자 진료비 ( ) 원 - 지역환자 진료비 ( ) 원	**② 지역환자 비율**('27년) (*지역환자 ÷ 전체환자 × 100*) % - 전체환자 진료비 ( ) 원 - 지역환자 진료비 ( ) 원

* 전체환자 진료비: 선별급여포함 요양급여비용 총액금액(건강보험, 의료급여)

** 지역환자 진료비: 신청기관 소재 중진료권과 동일 중진료권 또는 인접 시·군·구 내 거주 환자의 선별급여포함 요양급여비용 총액금액(건강보험, 의료급여)

③ 24시간 진료인력 수('25년) - 당직 또는 배후 근무 참여 전문의 ( ) 명 - 당직 또는 배후 근무 참여 간호사 ( ) 명	**③ 24시간 진료인력 수**('27년) - 당직 또는 배후 근무 참여 전문의 ( ) 명 - 당직 또는 배후 근무 참여 간호사 ( ) 명

* 24시간 진료인력 수: 응급 진료, 처치 및 수술, 특수검사 등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당직(병원 내) 또는 배후 근무에 연간 1회 이상 참여한 전문의 및 간호사 수(정규 교대 근무 제외)

** 배후 근무: 응급 호출(Call) 대기 근무

④ 24시간 진료과목 비율('25년)

(*24시간 운영 진료과목 ÷ 운영 진료과목 × 100*) %

코드	진료과목	운영 여부	24시간 운영 여부
합계		( ) 개	( ) 개
01	내과	O / X	O / X
02	신경과	O / X	O / X
03	정신건강의학과	O / X	O / X
04	외과	O / X	O / X
05	정형외과	O / X	O / X
06	신경외과	O / X	O / X
07	흉부외과	O / X	O / X
08	성형외과	O / X	O / X
09	마취통증의학과	O / X	O / X
10	산부인과	O / X	O / X
11	소아청소년과	O / X	O / X
12	안과	O / X	O / X
13	이비인후과	O / X	O / X
14	피부과	O / X	O / X
15	비뇨기과	O / X	O / X
16	영상의학과	O / X	O / X
17	방사선종양학과	O / X	O / X
18	병리과	O / X	O / X
19	진단검사의학과	O / X	O / X
20	결핵과	O / X	O / X
21	재활의학과	O / X	O / X
22	핵의학과	O / X	O / X
23	가정의학과	O / X	O / X
24	응급의학과	O / X	O / X
25	직업환경의학과	O / X	O / X
26	예방의학과	O / X	O / X

④ 24시간 진료과목 비율('27년)

(*24시간 운영 진료과목 ÷ 운영 진료과목 × 100*) %

코드	진료과목	운영 여부	24시간 운영 여부
합계		( ) 개	( ) 개
01	내과	O / X	O / X
02	신경과	O / X	O / X
03	정신건강의학과	O / X	O / X
04	외과	O / X	O / X
05	정형외과	O / X	O / X
06	신경외과	O / X	O / X
07	흉부외과	O / X	O / X
08	성형외과	O / X	O / X
09	마취통증의학과	O / X	O / X
10	산부인과	O / X	O / X
11	소아청소년과	O / X	O / X
12	안과	O / X	O / X
13	이비인후과	O / X	O / X
14	피부과	O / X	O / X
15	비뇨기과	O / X	O / X
16	영상의학과	O / X	O / X
17	방사선종양학과	O / X	O / X
18	병리과	O / X	O / X
19	진단검사의학과	O / X	O / X
20	결핵과	O / X	O / X
21	재활의학과	O / X	O / X
22	핵의학과	O / X	O / X
23	가정의학과	O / X	O / X
24	응급의학과	O / X	O / X
25	직업환경의학과	O / X	O / X
26	예방의학과	O / X	O / X

* 전체 진료과목: 신청기관에서 운영 중인 진료과목(의과 26개 진료과목 기준, 치과·한방 제외)

** 24시간 운영 진료과목: 매일 1인 이상의 전문의가 당직 또는 배후 근무를 실시한 진료과목

	운영현황	운영계획
❸ 진료 협력 강화	⑤ **진료협력 기반구축**('26.4월)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용 (O / X) - 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 사용 (O / X) - 진료협력센터 운영 (O / X)	⑤ **진료협력 기반구축**('27년)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용 (O / X) - 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 사용 (O / X) - 진료협력센터 운영 (O / X)
	⑥ **진료협력 사업 참여**('26.4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 참여 (O / X)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O / X)	⑥ **진료협력 사업 참여**('27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 참여 (O / X)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O / X)
	⑦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건수**('25년) - 의뢰 보낸 건수 ( ) 건 - 회송 받은 건수 ( ) 건	⑦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건수**('27년) - 의뢰 보낸 건수 ( ) 건 - 회송 받은 건수 ( ) 건
	⑧ **병·의원 의뢰·회송 건수**('25년) - 의뢰 받은 건수 ( ) 건 - 회송 보낸 건수 ( ) 건	⑧ **병·의원 의뢰·회송 건수**('27년) - 의뢰 받은 건수 ( ) 건 - 회송 보낸 건수 ( ) 건
	*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건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의뢰·회송한 건수 ** 병·의원 의뢰·회송 건수: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진료 협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과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의뢰·회송한 건수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ttps://ef.hira.or.kr)>진료의뢰·회송>송·수신목록'에서 조회기간, 사업구분 등 설정 후 조회	

5-1. 진료협력 상급종합병원 현황 (필요 시 행 추가하여 기재)

연번	종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1	*상급종합병원*	*11111111*	*AA병원*
2			
3			
4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재

5-2. 진료협력 병·의원 현황			(필요 시 행 추가하여 기재)
연번	종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1	*병원*	*22222222*	*BB병원*
2	*의원*	*33333333*	*CC의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진료 협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이행약정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위 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및 지원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지원기관은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지원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참여기간 및 사업 마지막 연도('28년) 성과평가 지원금 정산 완료까지 지원사업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지원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이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등이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4. 지원사업의 중단 및 제재조치 '가'의 ① 또는 ②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기간 중 동 사업의 모형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등과 상호 협의하여 개선된 모형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등이 지원사업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관련자료 제출

가.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환자 진료정보 등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가. 보건복지부 등은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 등은 지원기관이 지원사업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기관에 대해 지원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지원사업의 중단 및 제재조치

가.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정요건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

③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 등의 현장검증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 지원사업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예비지정 기관이 유예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지원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동시에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다. '가' 및 '나'의 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기 지급된 성과평가지원금 전액 및 이자

② 지원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24시간 진료지원금 기 지급분 및 이자 중 사업 참여 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가'의 ① 또는 ②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중단이 통보된 날까지 기 지급된 지원사업 수가의 요양(의료)급여비용 및 이자

라. ‘다’에 따른 이자는 민법의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다’ 및 ‘라’에 따른 금액은 지원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바. 지원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평가 지원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5. 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6.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